

용인시 특별고문 등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2. 8. 28 훈령 제334호
일부개정 2012. 12. 11 훈령 제340호
일부개정 2021. 11. 15 훈령 제499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
일괄개정규정)
일부개정 2023. 2. 15 훈령 제518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시정 주요정책 결정과 관련 용인시장의 자문을 위해 용인시 특별고문, 특별보좌역, 정책자문역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1. 15, 2023. 2. 15>

제2조(설치 및 기능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특별고문, 특별보좌역, 정책자문역(이하 “특별고문 등”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21. 11. 15, 2023. 2. 15>

1. 시정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
2. 중앙부처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
3. 지역개발·주민복지 등 지역현안 해소방안
4.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23. 2. 15]

제3조(구성) ① 특별고문 등은 명예직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3. 2. 15>

1. 국내·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
2. 시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삭제 <2023. 2. 15>

제4조(임기) 특별고문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2. 15>

제5조 삭제 <2023. 2. 15>

제5조의2(해촉) 시장은 특별고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특별고문 등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특별고문 등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
3. 특별고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
4. 특별고문 등이 업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특별고문 등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

[본조신설 2023. 2. 15]

제6조(자료제출 및 협조요구)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특별고문 등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1, 2023. 2. 15>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훈령 제340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1. 15 훈령 제499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
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2. 15 훈령 제518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